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 호 981 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정준호·강훈식·김한규

민병덕 · 민형배 · 박상혁

박홍근 • 박홍배 • 송옥주

이광희 · 이수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.
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교정공제회법」의 개정) 교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조(「상법」의 개정)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47조제1항 후단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56조제1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77조제1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87조의33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87조의37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60조의4제1항제3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60조의10제1항 단서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60조의17제1항제3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무상태표

제447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49조제3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貸借對照表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74조제2항제3호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27조의3제1항 단서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30조의7의 제목 중 "분할대차대조표"를 "분할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33조제1항 및 제2항 중 "貸借對照表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34조의 제목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및 제5항 중 "貸借對照表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5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무상태표

제616조의2의 제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635조제1항제9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조(「변호사법」의 개정)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8조의7제4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8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 로 한다.

제58조의9제2항 및 제3항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117조제2항제5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조(「법무사법」의 개정)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7조의7제4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7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 로 한다.

제5조(「신탁법」의 개정)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무상태표

제118조제1항제3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146조제1항제18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6조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 제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93조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94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72조제3항 중 "분할대차대조표"를 "분할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83조의 제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03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81조제1항제3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3조제6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3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예산 및 결산) ① (생	제18조(예산 및 결산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	2
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,	
재산목록,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	<u>재무상태표</u>
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	
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	
보고하여야 한다.	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9條(商業帳簿의 種類・作成原	第29條(商業帳簿의 種類・作成原
則) ① 商人은 營業上의 財産	則) ①
및 損益의 狀況을 明白히 하기	
위하여 會計帳簿 및 貸借對照	<u>재무상태</u>
<u>表</u> 를 作成하여야 한다.	<u> 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第30條(商業帳簿의 作成方法) ①	第30條(商業帳簿의 作成方法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商人은 營業을 開始한 때와	②
每年 1回이상 一定時期에, 會社	
는 成立한 때와 每 決算期에	
會計帳簿에 의하여 <u>貸借對照表</u>	재무상태표
를 作成하고, 作成者가 이에 記	
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.	
第247條(任意淸算) ① 解散된 會	第247條(任意淸算) ①
社의 財産處分方法은 定款 또	
는 總社員의 同意로 이를 定할	
수 있다. 이 境遇에는 解散事由	
가 있는 날로부터 2週間內에	
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	<u>재무상태표</u>
하여야 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第256條(淸算人의 義務) ① 淸算	第256條(淸算人의 義務) ①

人은	就任한	後	遲滯餄	이	會社
의 貝	才產狀態	를 🖁	周査司	-고	財産
目錄	과 <u>貸借</u>	對照	<u>表</u> 를	作成	하여
各社」	員에게 경	交付さ	하여이	: 한I	구 .

② (생략)

第277條(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)

- ① 有限責任社員은 營業年度末 에 있어서 營業時間內에 限하 여 會社의 會計帳簿・<u>貸借對照</u> 麦 기타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고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 를 檢查할 수 있다.
- ② (생략)
- 제287조의33(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)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 다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 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287조의37(잉여금의 분배) ① 유한책임회사는 <u>대차대조표</u>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액을 뺀 액(이하 이 조에서 "잉여금"이라 한다)을 한도로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.

<u>재무상태표</u>
· ② (현행과 같음) 第277條(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) ①
<u>재무상태</u> <u>표</u>

② ~ ⑥ (생 략) 제341조(자기주식의 취득)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무역의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그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1.・2.(생 략) ② (생 략)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

-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<u>대차대조표</u>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 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 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41조(자기주식의 취득) ①
•
게 ㅁ 기 씨 프
<u>재무상태표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재무상태표</u>
,
4
<u>재무상태표</u>

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60조의4(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)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 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 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 야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(제360조의9의 규정에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)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

② (생략)

제360조의10(소규모 주식교환) ① 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

세360조의4(주식교환계약서 등의
공시) ①
1.・2. (현행과 같음)
3
<u>재무상태표</u>
② (현행과 같음)
세360조의10(소규모 주식교환) ①

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 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 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 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 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 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 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⑦ (생 략)

제360조의17(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) ① 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주식이전의 날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재무상태
<u>표</u>
<u> </u>
<u>표</u>
표
표
표
표

1	١.	9	(생	략)
	. •	4.	(^%	4)

- 3.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 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 사의 최종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 익계산서
- ② (생략)
- 제447조(재무제표의 작성) ① 이 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대차대조표
 - 2. · 3. (생략)
 - ② (생략)
- 제447조의4(감사보고서) ① (생략)
 -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 재된 경우 또는 <u>대차대조표</u>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

1.·2. (현행과 같음) 3
<u>재무상태표</u>
② (현행과 같음) 제447조(재무제표의 작성) ①
1. 재무상태표
 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447조의4(감사보고서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
<u>재무상태표</u>

- 3.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 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
- 4. <u>대차대조표</u> 또는 손익계산서 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
- 5. <u>대차대조표</u> 또는 손익계산서 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
- 6. ~ 8. (생략)
- 9.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·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
- 10. (생략)
- ③ (생 략)

第449條(財務諸表등의 承認・公 第 告) ①・②(생 략)

3. <u>재무상태표</u>
4. <u>재무상태표</u>
5. <u>재무상태표</u>
6. ~ 8. (현행과 같음) 9
9.
<u>재무상태표</u>
10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第449條(財務諸表등의 承認・公
#449條(財務商表증의 承認·公 告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理事는 第1項의 書類에 對	3
한 總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	
遲滯없이 <u>貸借對照表</u> 를 公告하	<u>재무상태표</u>
여야 한다.	
제462조(이익의 배당) ① 회사는	제462조(이익의 배당) ①
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	<u>재무상태표</u>
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	
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	
있다.	<u>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第462條의3(中間配當) ① (생	第462條의3(中間配當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中間配當은 직전 決算期의	②
貸借對照表상의 순자산액에서	재무상태표
다음 各號의 금액을 공제한 額	
을 한도로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會社는 당해 決算期의 貸借	③ <u>채무</u>
<u>對照表</u> 상의 순자산액이 第462	<u>상태표</u>
條第1項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	
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	
때에는 中間配當을 하여서는	
아니된다.	
④ 당해 決算期 <u>貸借對照表</u> 상	④ <u>재무상태표</u> -

순자산액이 第462條第1項

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中間配當을 한 경우 理事는 會社에대하여 連帶하여 그 差額(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)을 賠償할 責任이었다. 다만, 理事가 第3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· ⑥ (생 략)

第474條(公募發行, 社債請約書) 第

- ① (생 략)
-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3. 最終의 <u>貸借對照表</u>에 依하여 會社에 現存하는 純財産額
- 4. ~ 15. (생략)
- ③ (생 략)

제522조의2(합병계약서 등의 공 지시)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第474條(公募發行, 社債請約書)
① (현행과 같음)
②
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 <u>재무상태표</u>
4. ~ 15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522조의2(합병계약서 등의 공
시) ①

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 다.

- 1. 2. (생략)
- 3. 각 會社의 최종의 <u>貸借對照</u> 表와 損益計算書
- ② (생략)

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 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 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 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 만,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 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 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 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② ~ ⑤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 <u>재무상</u>
태표
② (현행과 같음)
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 ①
<u>재무상태표</u>
<u>.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30조의7(분할대차대조표 등의	제530조의7(분할재무상태표 등의
공시) ① 분할회사의 이사는	공시) ①
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	
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	
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	
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	
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	
치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分割되는 부분의 貸借對照表	2재무상태표
3.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	3
상대방 회사의 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	2
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	
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	
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	
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	
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	2
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第533條(會社財産調査報告義務)	第533條(會社財産調査報告義務)
① 淸算人은 就任한 後 遲滯없	①
이 會社의 財産狀態를 調査하	

여	財	産	目鈞	k과	<u>1</u>	資借	對原	贤表	를
作	拔하	고	0]	를	株	主刹	包含	에	提
出	하여	コ	承	認	을 (얻ㅇ	야	한	다.
2	淸算	拿人	은	前	項으]]		을	얻
슨	後	遲潛	带矿	(0)	財	産	目錄	과	貸
借業	對照	<u>表</u>		法院	를에	提	出出	하 o	야
한1	다.								

第534條(<u>貸借對照表</u>・事務報告書 ・附屬明細書의 제출・監査・ 公示・承認)① 清算人은 定期 總會會日로부터 4週間전에 <u>貸</u> 借對照表 및 그 附屬明細書와 事務報告書를 作成하여 監事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淸算人은 <u>貸借對照表</u> 및 事務報告書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. 第579條(財務諸表의 作成) ① 理事는 每決算期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를 作成하여야 한다.
 - 1. 貸借對照表
 - 2. · 3. (생략)
 - ②・③ (생 략)

제616조의2(대차대조표 또는 이

<u>재무상태표</u>
②

<u>무상태표</u>
第534條(<u>재무상태표</u> ・事務報告書
・附屬明細書의 제출・監査・
公示・承認) ①
<u>ম</u>
무상태표
·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재무상태표</u>
第579條(財務諸表의 作成) ①
<u>.</u>
1. 재무상태표
2.·3. (현행과 같음)
2·③ (현행과 같음)
제616조의2(재무상태표 또는 이

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)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(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)는 제449조에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第635條(過怠料에 處할 行為) ① 算 회사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업무집행자, 이사, 집 행임원, 감사, 감사위원회 위원, 외국회사의 대표자, 검사인, 제 298조제3항·제299조의2·제31 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, 제299조의2·제310조제 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, 지배인, 청산인, 명의개서대리인,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 6조제2항·제407조제1항·제41

에	상당하는 것의 공고) ①
	<u>재무상태표</u>
	· (현행과 같음)
等 6 35	5條(過怠料에 處할 行爲) ①

5조·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 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그 행위에 대하여 형(刑)을 과 (科)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정관·주주명부 또는 그 복 본(複本), 사원명부・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, 의사록, 감사 록,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, 영 업보고서, 사무보고서, 손익계 산서,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 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 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 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서류, 결산보 고서, 회계장부, 제447조 · 제5 34조 · 제579조제1항 또는 제6 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 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

10. ~ 32. (생략)

_		
	~ 8. (현행과 같-	음)
).		
-		
-		
_	<u>재무상</u>	<u> 태표</u>
_		
_		
_		
_		
_		
_		
_		
_		
_		
<u> </u>). ~ 32. (현행과 ^{>}	7 <u>} </u>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의7(자본 총액 등) ① ~	제58조의7(자본 총액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무법인(유한)은 직전 사업	4
연도 말 <u>대차대조표</u> 의 자산 총	<u>재무상태표</u>
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	
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	
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	
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	
원의 증여로 보전(補塡)하여야	
한다.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58조의8(다른 법인에의 출자	제58조의8(다른 법인에의 출자
제한 등) ① (생 략)	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	②
직전 사업연도 말 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	
뺀 금액을 말한다. 새로 설립된	
법무법인(유한)으로서 직전 사	
업연도의 <u>대차대조표</u> 가 없는	<u>재무상태표</u>
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	
본금을 말한다.	
제58조의9(회계처리 등) ① (생	제58조의9(회계처리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
- ② 법무법인(유한)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<u>대차대조</u> <u>표</u>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<u>대차대</u> <u>조표</u>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를 검사할 수 있다.

제117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4. (생 략)
- 5.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<u>대차대조표</u>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
- 6. ~ 8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②
재무상태
<u> </u>
③
<u>재무상</u>
태표
제117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
승)
②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<u>재무상태표</u>
6. ~ 8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7(자본총액 등) ① ~ ③	제47조의7(자본총액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법무사법인(유한)은 직전 사	4
업연도 말 <u>대차대조표</u> 의 자산	<u>재무상태표</u>
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	
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	
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	
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	
구성원의 증여로 보전(補塡)하	
여야 한다.	·.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47조의8(다른 법인에의 출자	제47조의8(다른 법인에의 출자
제한 등) ① (생 략)	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	②
사업연도 말 <u>대차대조표</u> 의 자	<u>재무상태표</u>
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	
금액을 말한다. 새로 설립된 법	
무사법인(유한)으로서 직전 사	
업연도의 <u>대차대조표</u> 없는 경	<u>재무상태표</u>
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	
금을 말한다.	

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7조(회계서류 작성의무) ①	제117조(회계서류 작성의무) ①
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	
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	
야 한다.	
1. 대차대조표	<u>1. 재무상태표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8조(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	제118조(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
책임)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	책임) ①
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
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	
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	
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	
임이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	
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	
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	
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	
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대차대조표</u> 등 회계서류에	3. <u>재무상태표</u>
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	
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	

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 4. (생 략)

② (생략)

제14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~ 17. (생략)
- 18. 수익자명부·신탁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, 이 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신탁사채권 자집회 의사록, 재산목록, 대 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, 결손금처리 계산서, 그 밖의 회계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 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

19. ~ 28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46조(과태료) ①
<u>무상태표</u>
19. ~ 2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1조(재산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 의	제91조(재산목록과 <u>재무상태표</u> 의
작성)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	작성)
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	
자의 재산목록 및 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	
야 한다.	
제93조(그 밖의 보고 등) 관리인	제93조(그 밖의 보고 등)
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	
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	
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	
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	
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	
하고,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	
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	
의 재산목록 및 <u>대차대조표</u> 를	<u>재무상태표</u>
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	
출하여야 한다.	
제94조(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)	제94조(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)
①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목	①
록 및 <u>대차대조표</u> 를 작성하는	<u>재무상태표</u>
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	
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	
따라야 한다.	

제272조(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) ①·② (생 략)

③ 제1항의 경우 「상법」제53 0조의7(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), 「상법」 제522조의3(합 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 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5(주식 매수청구권의 특례)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, 「상법」 제530조의11(준용규정)제1항에 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 (단주의 처리)제1항 단서에 규 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.

④ ~ ⑧ (생 략)

제483조(재산목록 및 <u>대차대조표</u> 의 작성) ① 파산관재인은 재 산목록 및 <u>대차대조표</u>를 작성 하여야 한다.

②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 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 에도 또한 같다.

저	2/2소(문할 노는 문할합병에
	관한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
	<u>o</u>)
저	272조 ③
	<u>분할재무상태표</u>
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저	483조(재산목록 및 <u>재무상태표</u>
	의 작성) ①
	<u>재무상태표</u>
	2
	재무상태표

- ③ (생략)
- 제503조(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 산의 처분) ① (생 략)
 - ②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.
 - 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제503조(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
산의 처분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재무상태표</u>
③ (현행과 같음)